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3. 11. 16.  
行政財務委員會

##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93年 11月 10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1993年 11月 13日 回附
- 다. 上程日字: 第21回 行政財務委員會第1次(1993年 11月 16日) 上程 議決

##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財務局長 梁大雄)

### 가. 提案理由

- 國·공유재산 대부료 산출에 현실을 기하며 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과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나. 主要骨子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적용완화 - 지하층의 경우 지하3층까지 세분하여 적용(안 제24조)
-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하여 30일 연장(안 제25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확대(안 제38조)

##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姜性熙)

- (1) '93. 11. 13. 永登浦區廳長이 提出한 서울特別市永登浦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의 內容을 檢討한 바
  - (2) '93. 9. 20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示達된 서울特別市自治區區有財産管理條例改正準則(案)에 依據 다음 事項을 改正하고자 하는 內容으로 審議 處理함을 要합니다.
- 가. 建物貸付料 算出基準 適用緩和

- 2層 - 敷地評價額의 1/2 → 1/3
- 3層 - 敷地評價額의 1/3 → 1/4
- 4層以上 - 敷地評價額의 1/3 → 1/5
- 地下層 - 敷地評價額의 1/3 →
  - 地下 1층 1/3
  - 地下 2층 1/4
  - 地下 3층이하 1/5

### 나. 貸付料 納付期限 延長

- 契約締結日로부터 30日 以内 → 60日 以内

### 다. 隨意契約賣却範圍擴大

- 일단의 土地의 面積이 1000㎡以下로써 1981年 4月 30日 以前부터 地方自治團體 所有以外的 建物이 있는 경우 建物 所有者에게 賣却할 때 - 수의계약 가능
- 但, 多數의 地方自治團體 所有以外的 建物이 밀집하여 集團 占有된 土地는 1000㎡를 초과하더라도 수의계약 가능.

## 4. 審査結果: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5
----------	-----

제출년월일: 1993. 11. 10.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 국·공유재산 대부료 산출에 현실을 기하며, 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과 수의매각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적용완화-지하층의 경우 지하3층까지 세분하여 적용(조례 제24조)
-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30일연장(조례 제25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조례 제38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1 조제1항제3호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제2항”으로 한다.

제 24조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지하층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4조제3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 25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30일이내”를 각각

“60일이내”로 한다.

제 3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21 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p> <p>① (생략)</p> <p>1-2. (생략)</p> <p>3. 영 제9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생략)</p>	<p>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p> <p>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 제2항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 24 조(건물대부료산출기준)</p> <p>(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가. (생략)</p> <p>나. (생략)</p> <p>다. <u>지하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p> <p>3. (생략)</p> <p>가. (생략)</p> <p>나. <u>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u></p> <p>다. <u>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u></p> <p>라. <u>4층이상은 3분의1</u></p> <p>마. <u>지하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u></p> <p>(신설)</p> <p>(신설)</p>	<p>제 24 조(건물대부료산출기준)</p> <p>(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u>지하층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u></p> <p>다. <u>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u></p> <p>라. <u>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1</u></p> <p>마. <u>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u></p> <p>바. <u>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u></p> <p>사. <u>지하 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1</u></p>
<p>제 25 조(대부료의 납기) ① 구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년도분을 다음에 규정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체결연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u>30일</u>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u>30일</u>이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u>30일</u>이내</p> <p>3. (생략)</p>	<p>제 25 조(대부료의 납기) ① ----- ----- ----- -----<u>60일</u>----- -----</p> <p>1. (현행과 같음)</p> <p>----- ----- -----<u>60일</u>----- -----<u>60일</u>-----</p> <p>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 38 조(수의계약매각대상 재산의 범위)</p> <p>① (생략)</p> <p>1-2. (생략)</p> <p><u>(신설)</u></p>	<p>제 38 조(수의계약매각대상 재산의 범위)</p> <p>(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p>